

ESG위원회 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운영규정은 주식회사 숲(이하 "회사") 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, 환경, 사회,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장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"ESG 활동" 은 회사 경영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며, 환경, 사회, 지배구조와 관련한 손실로 인하여 회사에 운영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 내지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활동을 포함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하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1. 환경: 환경영향관리, 친환경 전략수립
2. 사회: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, 다양성 포용성 확보, 공정거래 관리 강화, 인적자본 경쟁력 강화
3. 지배구조: 지배구조 선진화,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지배구조 건전성, 투명성, 안정성 확보, 윤리경영 관리 강화

제3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운영지침)

이 운영규정의 제·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제2장 구 성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.
- ④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정함이 없을 경우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직무와 권한

제7조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ESG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,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결정 및 승인하며, 그 활동을 관리·감독·평가·검토하고,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최종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8조(의무)

위원회 위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의2를 준용한다.

제4장 회 의

제9조(회의의 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회의 소집 시 그 소집일자를 결정한다.

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10조(소집권자)

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며, 본 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아닌 위원이 소집할 수 있다.

② 각 위원은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1조(소집절차)

위원회를 소집하는 위원은 회의의 개최 시기 및 장소 그리고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일의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우편, 전자우편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결의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본다.

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의사항과 관계된 임·직원 및 외부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사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부의사항)

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ESG 활동 관련 정책의 수립, 관리에 관한 사항
2. ESG 활동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ESG 관련 활동의 구체적 실행 계획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
4. 기타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의해 또는 대표이사가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제14조(보고사항)

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3조 결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위원 및 임·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